

대신 10만기도후원 운동추진본부 규정(안)

제1장 총 칙

제 1조(목적) 대신 10만 기도후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(합동)산하 영남지역(대구, 부산, 울산, 경북, 경남)을 중심으로 전국의 모든 교회와 교인, 기타 독지가 및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기도와 재정적 후원 결성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대신 후원 체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위치와 소속) ① 대신 10만기도후원 운동본부(이하 “운동본부”라 한다)는 대신대학교 내에 두며 총장 직속으로 한다.

② 총장은 운동 본부의 운영의 실재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2장 조 직

제 3조(조직) ① 운동본부에 임원은 본부장 1인, 부분부장 1인, 총무 3인, 회계1인, 감사1인, 간사1인을 둔다(단, 총장이 본부장을 겸직한다).

② 총무는 3개 권역 (대구, 경북권역 / 부산,울산,경남권역 / 서울,경기 및 기타지역)으로 나누어 각 1인씩 둔다.

③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을 구성원으로 한 예배지원팀과 행정지원팀을 둔다.

제 4조(본부 임원회의 구성과 기능) ① 임원의 구성은 본부장, 부분부장, 총무, 회계, 감사를 임원으로 구성하며 본부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지역본부 및 실무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
3. 활동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
4. 추진현황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
5.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
6.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할 사항

제 5조 (임원의 직무 및 회의) ① 본부장은 운동본부를 대표하고, 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본부장은 운동본부 임원과 간사를 임명하고 필요시 운동본부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③ 부분부장은 본부장 보좌와 부재 시 본부장 역할을 대행한다.

④ 총무는 운동본부의 전체적 업무와 일반사무에 대해 관리,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.

⑤ 회계는 운동본부의 수입 및 지출 부분에 관하여 기록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.

⑥ 감사는 운동본부의 투명한 회계와 업무상황을 감독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.

⑦ 회의는 필요시 본부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조(임원의 임기 및 위촉)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 7조(소위원회) ① 운동본부의 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·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영입 또는 관련 실무자를 지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.

제 8조(사무실위치 및 직원) ① 운동본부의 업무를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대신대학교 내에 사무실을 둔다.

② 사무실에는 업무전담을 위한 간사를 두며, 간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급여 및 성과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9조(여비) ① 운동본부임원 및 실무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후원방법 및 기금활용

제10조(가입신청) ① 운동 본부가 정한 후원의 이유와 목적 및 그 방법을 이해하고 기도와 재정적 후원의 의지가 있는 전국 교회와 교인, 독지가 및 기관 단체를 가입대상 신청자로 한다.

제11조(기도 후원제목) ① 본 대학교 교육이념에 맞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구현에 맞추어 후원회의 기도제목은 다음과 같으며, 필요에 따라 운동 본부는 그 기도제목을 수정보완 할 수 있다.

1. 대신대학교 발전.
2. 훌륭한 인재양성.
3. 지역교회의 부흥과 성장.

제12조(후원방법) ① 기도후원 : 1일 1분이상의 기도후원.

② 재정후원 : 회원은 매월 1구좌 1,000원으로 하며, 1구좌이상 정기적으로 자동 이체나 기타의 편리한 후원 방법으로 한다.

제13조(후원회 기금활용) ① 후원회에서 모금된 기금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.

1. 학생 장학기금 활용.
2.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시설기금활용.
3. 교원확보 및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복지 및 연구를 위한 기금활용.
4. 지역교회 목회자 및 지도자의 재훈련.
5. 본부 운영비.
6. 기타 학교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.

제4장 지원체제

제14조(고문단) ① 본 운동 본부의 활성화를 위해 본교의 이사들과 본교단의 덕망있는 지도급 인사 중 약간 명을 고문으로 세울 수 있다.

제15조(동창회지원) ① 동창회는 본 운동본부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다.

제16조(교직원 및 학생지원) ① 교직원은 본 운동의 후원을 위해 운동본부가 구성하는 각종 위

원회와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다.

② 본교 학생들은 운동본부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다.

제17조(자원봉사자) ① 교직원의 배우자, 가족, 학부모, 기타 뜻있는 독지가들은 자원봉사로 후원 운동 활동에 참여한다.

제18조(지원팀의 예우) ① 본 운동본부가 추진하는 각 후원과 행사시 참여하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9조(행정지원) ① 운동 본부의 기획과 기타 업무 수행을 위해 학교는 행정지원 한다.

제20조(규정개정 및 운영세칙) ① 규정개정은 본부 임원회의 정족수 3분의 2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.

② 이 규정에 정한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세칙 등은 본부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